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0나449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9. 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7. 2. 선고 2019가소2020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1. 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원고는 당초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5. 11. 2.로 구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 2016. 4. 30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(2019. 8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), 원고가 이 사건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에 비추어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다시 2015. 11. 2.로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택한다]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3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으므로 항소취지는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정리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‘C’라는 상호로 차량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, 피고는 2015. 4.경부터 2016.

5.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.

나. 원고는 2016. 4. 30.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그 명목을 ‘과직비’¹⁾로 기재하여

1,10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금원’이라 한다)을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2016. 4. 30. 과적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가불받았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, 나중에 노동청에 위 과태료가 원고의 부담이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덜 받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급여 전부를 받아갔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원고가 2016. 4. 30. 피고에게 과적으로 인한 과태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등 명목의 금원 합계액이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액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

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
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
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하현국, 판사 김선영, 판사 김유성

1) ‘과적비’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.